

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483,841,646	44,515,249
일반회계	1,266,114,331	37,983,430
특별회계	217,727,315	6,531,819
공기업특별회계	168,635,313	5,059,05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3,971,501	2,519,14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4,663,812	2,539,914
기타특별회계	49,092,002	1,472,760
주택사업특별회계	48,472	1,454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490,632	224,719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704,000	21,12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0,753,720	622,612
교통사업특별회계	17,084,215	512,526
대지보상특별회계	1,036,000	31,080
수질개선특별회계	1,974,963	59,249

제 2 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4 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5 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7,512,268천원』 으로 한다.

제 7 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액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